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3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3월 16일

3. 제안이유

- '95. 6월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기획단의 설치운영과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 그리고, 차량 신규구입 및 감축등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이한 정원증원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정원 : 26명 증원

- 본청 : 1명

. 지방자치기획단 설치운영 5명 시군통합추진기획단 △1명

. 고급간부양성과정교육대상자 △1명 차량감축에 따른 정원 △2명

- 직속기관 —— 24명
 - . 신규소방장비구입 22명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1명
 - . 농촌진흥원 단양마늘시험장 차량구입 1명
- 사업소 —— 1명
 - . 도유립사업소 차량구입 1명

5. 검토보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현행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총수에 있어
본청 892명을 893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직속기관의 840명을 846명으로
24명을 증원하며, 사업소의 369명으로 되어있는 증원을 370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 . 본청의 정원에 있어서 1명이 증원되었는바 이는 지방자치기획단 설치
운영에 필요한 5명의 증원과 시군통합추진기획단 1명, 고급간부양성
과정 교육대상자 1명, 차량감축에 따라 2명 등을 각각 감원 조정한
것이며
- . 직속기관의 정원에 있어서는 24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는 신규소방장비구입에 따라 22명이 증원되었고,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대상자 1명과 농촌진흥원 단양마늘시험장 차량구입에 따른 1명의
증원이 필요하므로서 증원하게 되었으며
- . 사업소에 있어서의 1명 증원사유 또한 도유립사업소의 차량을 구입함
으로써 그에 따른 소요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195년 6월 4대 지방선거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무득이한 정원 증원에 기인한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종개정조례(안)